



의안번호	제 2011 - 24호
의 결 연 월 일	2011. 12. 19. (제38차 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 I. 제46차 전체회의 1
 - 1. 일시·장소 1
 - 2. 참석자 1
 - 3. 주요 안건 1
 - 4. 회의 요지 1

- II. 제47차 전체회의 9
 - 1. 일시·장소 9
 - 2. 참석자 9
 - 3. 주요 안건 9
 - 4. 회의 요지 9
 - 가. 성범죄 집행유예기준 수정안 검토 9
 - 나.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14
 - 다. 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15
 - 라.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16

- III. 향후 일정 17

- 별첨 정준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II)”
- 정준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제1안)과 대안(제2, 3안)의 비교”
- 김혜정, “성폭력범죄 양형기준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
- 강우예,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II) 검토의견”
- 심재철, 조석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검토의견”
- 심재철, 조석영, “성범죄 집행유예기준 수정안 제안(II)”

정준화,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12. 12.)”
심재철, 조석영, “성범죄 집행유예기준 수정안(정준화 위원안) 검토”
김혜정, “성폭력범죄 집행유예 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
정준화,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12. 12.)”
김혜정,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에 대한 검토의견”
심재철, 조석영, “교통범죄 집행유예 기준 검토 의견”
홍준호, “폭력범죄 양형기준 검토(12. 12.)”
정준화,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12. 12.)”
정순섭, “금융·경제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11. 28.)”
심재철, 조석영, “증권·금융범죄군 권고 형량범위 검토(2)”
홍준호,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검토(12. 12.)”

I. 제46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1. 11. 28.(월) 14:30 ~ 17: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8명)

- 수석전문위원, 범현, 심재철, 이수정, 정준화, 조석영, 홍준호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제5차 공청회 대상 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4. 회의 요지

- 제46차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참석한 전문위원이 7명으로 재적 전문위원 15명의 과반수에 미달함
- 양형위원회 규칙이나 운영규정상 전문위원 회의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나, 전문위원의 업무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대한 연구 및 보고'(양형위원회 규칙 제8조 제3항)를 위하여 일단 회의를 진행하되, 불참한 전문위원들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통하여 쟁점별 의견을 받기로 함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및 제5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준초안

의 쟁점에 관하여 전문위원들이 회의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제시
한 의견은 별지와 같음

1.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쟁점 및 의견

○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쟁점	의견		
○ 형량범위 수정 대상 ○ 기본영역 형량범위 하한 ○ 영역 간 형량범위 중첩 여부 ☞ 제1안 내지 제3안의 구체적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는 회의자료 중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대안의 비교” 참조	① 제1안 - 모든 성범죄 유형의 형량범위 수정 - 기본영역 형량범위 하한을 법정형 하한과 일치 - 영역 간 형량범위 중첩 불허	② 제2안(심재철, 조석영) - 장애인,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위주 형량범위 수정 - 기본영역 형량범위 하한이 법정형 하한을 하회 - 영역 간 형량범위 중첩 불허	③ 제3안(강우예, 김혜정, 범현, 이수정, 정준화, 이정훈, 이주원, 이진국, 정순섭, 최진녕, 홍준호) - 장애인,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위주 형량범위 수정 - 기본영역 형량범위 하한이 법정형 하한을 하회 - 영역 간 형량범위 중첩 허용 ※ 형량범위 중첩 폭을 좀 더 넓히거나 가중영역 상한을 좀 더 상향조정하자는 별개 의견 있음
	(기타 의견)		

○ 양형인자표

쟁점	의견	
‘처벌불원’	① 특별감경인자로 존치하되, 요건 엄격화(강우예, 김혜정, 범현, 심재철, 이정훈, 이주원, 이진국, 정순섭, 정준화, 최진녕, 홍준호) ※ ‘장애인 또는 아동 대상 성범죄’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계속 종용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명시적 규정 추가하자는 별개 의견(조석영)	②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한정해서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이수정)
	(기타 의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① 현행대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인자에서 제외,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도 제외(김혜정, 범현, 이수정, 이정훈, 이주원, 이진국, 정순섭, 정준화, 조석영, 최진녕, 홍준호)	②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형에서 일반가중인자로 추가(심재철)
	(기타 의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와 별도로 '보호상태의 부재'라는 양형인자 설정 필요(강우예)	
장애 정도의 양형인자 반영 여부 ※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장애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대체로 반대	① 반대의견(범현, 이정훈, 이주원, 이진국, 정순섭, 정준화, 조석영, 최진녕, 홍준호) - 실무나 판례의 축적 없이 장애 정도를 구분하여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위험	② 찬성 의견(강우예, 김혜정, 심재철, 이수정) -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로 구분하여 양형인자로 반영
	(기타 의견)	

○ 집행유예 기준

쟁점	의견	
현행 집행유예 기준에 실행 권고 사유를 부기하는 방안의 채택 여부	① 반대 의견(강우예, 김혜정, 이정훈, 이주원, 이진국, 최진녕) - 부기방안은 법관의 양형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왜곡 - 성범죄만 특별히 실행 권고 사유를 기재할 필연적 이유가 있는지의 문 - 장기적 관점에서 모든 범죄군별 집행유예 기준을 통일적으로 재검토해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	② 찬성 의견(심재철, 조석영) - 모든 범죄별 집행유예 기준을 일시에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각 범죄군마다 실행 권고사유를 선정해서 부기하여 검증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
	(기타 의견) 정순섭 : 견해표명 하지 않음	

2.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의 쟁점 및 의견

○ 양형인자표

쟁점	의견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에서 삭제할 것인지 여부	① 일반가중인자로 존치(강우예, 심재철, 이정훈, 이주원, 이진국, 정순섭, 정준화, 조석영, 최진녕, 홍준호) ※ 교통범죄에서만 중한 상해를 7주 이상으로 규정하자는 별개 의견 있음	② 일반가중인자에서 삭제(없음)
	(기타 의견) 만약 “7주 이상 and 후유장애 ~”이라고 한다면, 일반가중인자 존치하되,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개념이라면, 삭제함이 타당(김혜정)	
‘처벌불원’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① ‘교통사고 치사’ 등 사망의 결과 발생한 경우에만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심재철, 이정훈, 이주원, 정순섭, 정준화, 조석영, 홍준호)	② 모든 유형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강우예, 김혜정, 이진국, 최진녕)
	(기타 의견)	

○ 집행유예 기준

쟁점	의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로 추가할 것인지 여부	① 찬성 의견(강우예, 김혜정, 범현, 심재철, 이정훈, 이주원, 이진국, 정순섭, 정준화, 조석영, 최진녕, 홍준호)	② 반대 의견(없음)
	(기타 의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추가할 것인지 여부	① 반대 의견(강우예, 김혜정, 범현, 이정훈, 이주원, 이진국, 정순섭, 정준화, 홍준호) -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미 일반참작사유로 반영되었으므로 중복 반영은 부당		② 찬성 의견(심재철, 조석영, 최진녕)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수준 미약	
	(기타 의견)			
‘동종 전과’에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① 제외 의견(이정훈, 이주원, 이진국, 최진녕, 홍준호) - 당해 사건이 음주운전과 무관한 사건임에도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을 부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함은 부당		② 포함 의견(심재철, 정순섭, 조석영) - 음주운전의 폐해가 크고 양형인자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동종전과에 포함시킴이 타당	
	③ 한정 포함 의견(김혜정, 강우예, 범현) - 당해 사건이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인 경우에만 동종 전과에 포함시키자는 의견			
(기타 의견)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을 하나의 참작사유로 통합할 것인지 여부	① 반대 의견(강우예, 김혜정, 범현, 심재철, 이정훈, 이주원, 정순섭, 정준화, 최진녕, 홍준호) - 타범죄군 집행유예 기준과의 통일성을 해치게 됨 -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임		② 찬성 의견(심재철, 이진국, 조석영) - 사실상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구금이 곤란하다는 같은 속성을 가진 인자이므로 통합함이 타당	
	(기타 의견)			

3. 금융·경제범죄 양형기준초안의 쟁점

○ 범죄군 명칭 변경 방안

쟁점	의견		
금융·경제범죄의 명칭 변경 방안 ※ 금융·경제범죄의 명칭이 부적절하므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견 없음	① 증권·금융범죄(최동렬, 김혜정, 심재철, 이정훈, 이주원, 조석영, 최진녕)	② 증권·금융부패범죄(범현, 정준화)	③ 금융범죄(이진국, 정순섭, 홍준호)
	(기타 의견) 강우예 : 견해표명 하지 않음		

○ 형량범위

쟁점	의견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의 형량범위	① 횡령·배임범죄의 형량범위와 동일하게 설정하자는 의견(강우예, 김혜정, 범현, 이주원, 이진국, 정준화, 홍준호)	② 일반사기 또는 조직적 사기의 형량범위와 동일하게 설정하자는 의견(심재철, 이정훈, 정순섭, 조석영, 최진녕)
	※ 조직적 시세조종행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자는 별개 의견 있음	※ 조직적 시세조종행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자는 별개 의견 있음
(기타 의견) 정순섭 : 조직적 시세조종행위와 일반적인 시세조종행위의 자본시장질서 침해위험에 본질적 차이 없음.		

4.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초안의 쟁점

○ 유형분류

쟁점	의견			
소유형 분류 여부 또는 분류 방안 ※ 대유형을 권리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로 3분하는 것에는 이견 없음	① 제1안 ○ 권리침해행위 ○ 영업비밀침해 ○ 부정경쟁행위	② 제1-1안(이정훈, 이진국, 정준화, 최진녕) ○ 권리침해행위 ○ 영업비밀침해 - 국내침해 - 국외침해 ○ 부정경쟁행위	③ 제2안(김혜정, 심재철, 조석영) ○ 권리침해행위 - 단순침해 - 중대침해 ○ 영업비밀침해 - 국내침해 - 국외침해 ○ 부정경쟁행위 - 단순침해 - 중대침해	④ 제2-1안(이수정, 홍준호) ○ 권리침해행위 - 단순침해 - 중대침해 ○ 영업비밀침해 - 단순침해 - 중대침해 ○ 부정경쟁행위 - 단순침해 - 중대침해
	(기타 의견) 강우예, 이주원, 정순섭 : 견해표명 하지 않음			

II. 제47차 전체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11. 12. 12.(월) 11:00 ~ 16:45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2.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강우예, 심재철, 이수정, 이정훈, 이주원, 정순섭, 정준화, 조석영, 최진녕, 홍준호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성범죄 집행유예기준 수정안 검토
- 교통, 폭력,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4. 회의 요지

가. 성범죄 집행유예기준 수정안에 대한 검토

(1) 서술식 평가원칙

- 서술식 평가원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데 이견이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③은 동일

④ 위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2) 개별 부기사유에 대한 검토

○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유사성교 또는 장애인 대상 강간”

-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대상 강간, 강제유사성교,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한 강제추행”으로 부기하자는 의견
-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한 강제추행”의 개념과 적용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 소위원회에서 법조인은 물론 일반인 누구나 실형 권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한정하여 부기하기로 했는데, 전문위원 회의에서조차도 논란이 있거나 판단이 쉽지 않은 사유라면 부기사유로 부적절하다는 의견
- 장애인 대상 강제유사성교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작량감경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죄임에도 일률적으로 실형을 권고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를 무시하게 되어 부적절하다는 의견
- 법정형이 5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라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임에도, 작량감경해서 무조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종래의 양형마인드가 문제이므로 이를 바꾸기 위해 실형권고사유의 부기가 필요하다는 의견
- 종래 양형실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는 실무와 조금 괴리되더라도 규범적 상향조정을 할 수 있으나, 부기사유는 그 사유가 존재하면 당연히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으로 한정해야지 부기사유를 통해서 법관의 양형마인드를 바꾼다는 식의 접근방법은 위험하다는 의견
- “강간에 준하는 성폭력”을 부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준하는”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고 부기사유는 가급적 명확하고 간결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논의결과,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유사성교 또는 장애인 대상 강간”을 실형 권고사유로 부기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부기할 경우 별도로 위 사유

를 부기할 필요가 없다는 별개 의견 있음

○ “특수강도강제추행, 강도강간”을 부기하는 데 의견 일치

※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부기할 경우 별도로 위 사유를 부기할 필요가 없다는 별개 의견 있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동일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동일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성범죄는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또는 장애인 보호시설 등 종사자에 의한 범행인 경우가 많은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이나 장애인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은 이미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되었으므로 별도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거나 실형권고사유로 부기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
- 다수의 개념을 “5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요건이 엄격하므로 “3인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만 양형인자의 정의를 다르게 하는 것은 양형기준의 통일성을 저해한다는 의견
- 특별양형인자의 개념보다 범위를 넓히고 요건을 완화하여 부기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
-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계속적·반복적 범행”으로 수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

👁️ 논의결과,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실형권고사유로 부기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다만, ‘다수’의 개념을 양형인자의 정의(‘5인 이상’)와 달리 ‘3인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별개 의견 있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추상적 개념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사유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부기사유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분석결과 행위태양이나 비난가능성이 동일함에도 어떤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어떤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등 양형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형권고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
- 사안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는 사유는 법조인 또는 일반인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실형권고사유로 삼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
- 동일한 내용의 주요참작사유가 존재하고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에서 이미 평가되었음에도 어떠한 내용의 변경 없이 실형권고사유로 부기하는 것은 이중평가의 위험이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의견
- 사람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실형권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 논의결과,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를 실형권고 사유에서 제외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의견	논거
부기 (다수의견)	○ 성폭력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데, 3년 내에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은 피고인이라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 주요참작사유에 “10년 이내의 동종 전과”가 있으므로 그 기간을 “3년 이내의 동종 전과”로 줄인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실형을 권고할 사유에 해당함 ○ 가벼운 추행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이라도 추행의 습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죄질을 감안하여 형량범위 하한을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실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제외 (소수의견)	○ ‘동종 전과’에는 죄질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의제추행이나 강제추행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동종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권고하는 것은 자칫 구체적 타당성을 저해할 우려 있음 ○ 가벼운 성범죄로 5년 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서 이번에 가벼운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 무조건 실형을 권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 대하여 실형을 권고하는 것이어서 부적절 ○ 실형권고 부기사유는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3년이라는 시간으로 일률적으로 구분할 경우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3년 1개월 전 전과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반면, 3년 전 전과의 경우에는 실형이 권고되어 문제가 있음

○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의견	논거
제외 (다수의견)	○ 위 사유에 해당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아예 불가능하여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사유임 ○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한을 이탈하는 것은 집행유예 선고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사유는 큰 의미가 없음 ○ 이미 권고 형량범위를 이탈한 이상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에 적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 사유는 무의미함 ○ 단순히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3년 초과’라는 사유로는 일반예방적 효과라는 의미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중대 범죄를 특정해서 기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 ○ 납득하기 어려운 집행유예 선고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상소권 행사 또는 사회적 감시를 통해서 시정하는 것이 타당
부기 (소수의견)	○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이탈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 기준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권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형량범위 이탈 및 집행유예 선고를 합리화할 우려가 있음 ○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형량범위를 이탈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임을 명백히 할 필요 있음 ○ 만약, 부기사유에서 제외된다면,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의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를 ‘권고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인 경우’로 수정하거나 형량범위 하한이 3년을 초과하는 영역을 모두 실형권고사유로 부기함이 타당

나.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동종 전과’에 다음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반영하는 방안에 관하여 이견 없음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한다.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불원’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포함시킬 경우에 발생할 실무상 문제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종합보험 가입’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란 측면에서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 금액 공탁’과 비슷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피고인은 별다른 추가 손실 없이 위 요건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큼에도 ‘종합보험 가입’은 일반감경인자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특별감경인자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처벌불원’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 금액을 공탁한 경우 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
 - 구체적 사안에서 특별감경인자 또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양형인자인 ‘상당 금액 공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특별양형인자로 규정하는 것은 가급적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피해자와 피고인이 인적 대면관계가 형성되었던 사기죄, 상해죄 등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

- 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살인, 강도치사 등)는 합의의 상대방인 유족과 인적 대면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교통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와 인적 대면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처벌불원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끝에 상당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합의에 준할 정도의 공탁으로 피해가 회복되므로 의미 있으나, 비재산범죄인 살인 또는 성범죄에 있어서 공탁이 피해 회복에 큰 의미 없으므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진지한 노력”은 불명확하고 다의적인 개념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 “합의에 준할 정도의 공탁”이란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으로써 피해자가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민사재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모두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

다. 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상상적 경합인 경우의 처리방법 중 2-4안을 채택할 경우에 발생할 실무상 문제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상해범죄 양형기준에서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였으므로 현행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중한 상해’가 이중적으로 불이익한 평가를 받게 되어 적절치 않으므로 상해범죄에서 ‘공무집행방해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공무집행방해범죄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
 -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경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양 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한 다음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하나의 형량범위만 채택하므로 양형인자의 이중평가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

라.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의 권고 형량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의견	논거
조직적 사기 형량범위 (다수의견)	○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는 다수가 가담하여 사기적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므로 조직적 사기와 속성이 유사하고, 투자자 개인들의 재산 침해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케 하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 침해 범죄임 ○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에는 사기범죄의 특별가중인자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라는 2개의 특별가중인자가 이미 내포되어 있음 ○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미국, 영국 등에 비해 규모가 작고, 개인투자자의 비율이 높아 소액의 자금으로 시세조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 제재의 정도가 현재보다 높아져야 함 ○ 단순한 재산범죄와 달리 금융시장질서 교란적 측면이 있고, 피해자의 범위가 상당히 넓으므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일반사기보다는 좀 더 형량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특성상 다수의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때문에 쉽게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경우 다수의 공익을 더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조직적 사기의 형량범위를 택하되, 불특정 다수 피해자라는 전형적 속성이 이종으로 평가되면 안 되므로 그러한 양형인자는 가중인자에서 제외하여 양형인자표를 간소화하는 것이 타당
일반사기 형량범위 (소수의견)	○ 이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감경영역 형량범위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징역 3년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득액 5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영역 형량범위에 징역 3년이 포함되어야 법정형을 정한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며, 양형기준이 입법을 대체할 수 없음 ○ 조직적 사기죄의 형량범위를 차용할 경우, 종래의 양형실무를 전혀 포섭할 수 없게 되므로 양형실무와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고 연착륙될 수 있도록 일반사기 정도의 형량범위를 설정함이 바람직 ○ 중형을 선고하는 것만이 증권범죄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없고, 금융시스템 개선이나 감독기능 보완 등의 방법도 중요함 ○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에는 사기범죄의 특별감경인자인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아서 일반사기보다 중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님 ○ 조직적·전문적 시세조종만을 상정해서 형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일반사기 형량범위를 택하되,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은 가중영역으로, 단순가담자는 감경영역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둘 필요가 있음 ○ 조직적 사기 형량범위를 채택할 경우, 기본영역 형량범위 하한이 법정형 하한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작량감경사유가 있어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작량감경한 형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게 되는 문제 발생

Ⅲ.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48차 전체회의는 양형위원회 제38차 회의 결과를 보고 일정을 정하기로 함